

# 송대 법률이 규정한 여성의 재산상속

1501369 사학과

## 목차

- I. 머리말
- II. 혼인법이 규정한 여성의 지참금
  - 1. 여성의 지참재산과 가산상속
  - 2. 지참금과 관련된 소송사례
- III. 호절법(戶絕法)이 규정한 여호(女戶)의 재산상속
  - 1. 과부의 재산상속과 호주 인정
  - 2. 딸의 재산상속과 호주 인정
- IV. 맷음말

## I. 머리말

전통적인 중국의 가족 형태를 떠올린다면 가부장적 분위기의 대가족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가천하 사회로 규정되는 전통적인 중국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제사상속과 호주계승, 그리고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산공유가 이루어졌다.<sup>1)</sup> 그러나 당송변혁기(唐宋變革期)를 거치면서 중국사회에서는 사대부 서민사회의 발달로 가족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 중심의 독립가정이 증가했다. 독립가정의 증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조세를 부담하는 방식뿐 아니라 상속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송대 사회 변화로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도 재산상속의 기회가 주어졌고, 송대 여성들은 재산권을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 이전과는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sup>2)</sup>

중국의 가족제도를 연구한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는 당송변혁기 사유재산제도와 상속제도 변화가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규정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sup>3)</sup> 또 그는 지참금 연구 등을 통

1) 남은혜, 「송대 가족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법사학연구』, 38, 2008, 215쪽.

2)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법사학연구』, 35, 2007, 180쪽.

3) 일본 학자인 니이다 노보루와 시가 슈우조(滋賀秀三)는 중국 법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자 분법을 둘러싸고 송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이후 학자들에게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니이다 노보루의 주장을 이어 柳田節子는 여러 제약은 있었으나 송대 여성들의 여승권(女承權)이 법규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 여성들이 재산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중국에서는 위천안이 柳田節子의 주장을 계승했다.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家族村落法』, 여기에서는

해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역할, 혼인, 재산영역에서의 전례 없는 지위상승에 대해서 주장했다.<sup>4)</sup> 니이다 노보루뿐만 아니라 시가 슈우조(滋賀秀三)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중국 가족법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가족 내부의 구조, 재산상속, 혼인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일본 학계를 시작으로 중국 학계에서도 여성의 지참금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여성의 재산권 연구는 최근 20년간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만 이전의 연구들은 지참금에 대한 인구에 치중되어 있어 당송변혁기 이후 여성들의 재산권이나 경제적 역량 및 경제적 지위 변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송대 여성의 재산상속권을 지참금과 더불어 여호의 재산상속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참금 제도가 혼인과 관련된 재산상속을 설명한다면, 여호의 경우는 호절상황에 따른 여성들의 재산상속을 설명해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송대 혼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참금 제도와 그 실효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송형통(宋刑統)』과 『청명집(清明集)』의 규정과 소송사례를 통해 실제 지참금제도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여성들의 재산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호절법(戶絕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절 상황과 더불어 송대 여호(女戶)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명집』의 사례를 통해 호를 계승함으로써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실제 행사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장에서 여성의 혼인 상태와 재산의 여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송대 여성의 재산 상속이 여성들의 권리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혼인법이 규정한 여성의 지참금

송대 가족제도에 대한 연구 중 하나인 니이다 노보루는 여성의 재산권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송대 여성의 지참금제도다. 송대 여성의 지참재산은 여성들의 혼인비용이었으나 단순한 예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송대 지참금은 가산상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고유의 재산권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근거였다.

이전 시대에도 혼인비용은 존재했으나 가족의 형태 변화와 함께 가족 내 가산공유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지참재산은 부부의 독립적인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여성의 직계자손에게 상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지참재산은 여성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권리였다. 이를 근거로 니이다 노보루는 송대 전반에 나타난 지참금 보장법이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니이다 노보루의 주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참금제도가 가지는 성격과 소송사례를 통해 여성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장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85쪽)에서 재인용.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법사학연구』, 31, 2005, 102-103쪽.  
4)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清明集)』(이하 『청명집』으로 약칭)은 남송대 사법 감독관인 제점형옥(提點刑獄)과 같은 판관들의 판결을 모아 기록한 판결집이다. 전체 1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권6부터 권9까지는 호혼문과 관련된 판결이다. 송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예를 들어 묘비명과 같은 사료는 송대 상층 여성들의 삶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청명집』은 혼인과 상속, 채무와 거래에 대한 판결을 통해 송대 여성들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180-181쪽.  
5) 滋賀秀三, 『中國家法の原理』,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86쪽)에서 재인용.

## 1. 여성의 지참재산과 가산상속

혼인비용 자체는 당대에도 존재했으며, 혼인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당대에는 혼인을 일종의 거래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제 육례(六禮)의 절차에서 가산이 넉넉한 가문은 폐물 교환을 통해 재물을 거래하기도 했다.<sup>6)</sup> 송대의 지참금도 옷, 장신구, 토지문서를 포함하는 여성의 혼인비용이었다는 점에서 전달되는 내용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 지참금이 당대의 혼인비용과 달리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여성의 재산상속 권리였기 때문이다.

송대 여성들은 지참재산을 통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를 수 있었으며, '처(妻)'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중국 사회에서 '첩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닌 '정식 처로서 대우받는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처로서 대우받는다는 것은 가정 내 지위, 권리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정식 처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시댁에서 죽은 남편의 아내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척은 노비를 사유할 수 없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처와 척의 지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다.<sup>7)</sup>

지참재산을 통해 정식 처로 인정받는 것 외에도 많은 지참금은 시댁 식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득이 되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며느리로서 겪어야 하는 고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참재산은 상황에 따라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구제수단이 되었고, 남편이 가업을 운영할 때는 장사 밀천이 되었다. 지참재산은 여성으로 하여금 처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남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댁에서 본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sup>8)</sup>

송대 여성의 지참재산의 성격은 그 반대가 되는 남성의 혼인비용인 빙재(聘財)와 비교한다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남성의 빙재가 단순히 혼인절차 내에서 혼인비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성의 지참금은 가산상속의 의미가 강했다. 빙재와 지참재산의 전달 방식을 통해 두 재산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절차에 따라 빙재가 먼저 처가에 전달되는데, 빙재는 처가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처가의 재산으로 흡수된다. 반면, 지참금은 여성의 부모가 신부의 시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재산의 형태였다.<sup>9)</sup> 즉 전달된 지참금은 여성의 고유한 재산권으로 인정되었다.

지참재산의 근원에 대해 시가 슈우조는 남성이 먼저 혼인비용을 전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흡수된 빙재의 내용물이 일부 지참재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물의 근원은 시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참재산의 근원을 시댁에서 찾는다면, 여성의 가산상속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니이다 노보루는 시댁에서 전달된 일부 재물이 포함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미 처가에 흡수된 재물이기 때문에 신부 측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6) Ebrey, Patricia Buckley, 배숙희,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157-158쪽.

7) Ebrey, Patricia Buckley, 배숙희,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174쪽.

8) Ebrey, Patricia Buckley, 배숙희,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174쪽.

9)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87쪽.

10) 滅賀秀三, 『中國家法の原理』,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86쪽)에서 재인용.

반박했다.<sup>11)</sup> 이에 대한 근거로 빙재가 전달된 이후 바로 처가에 흡수되어 처가의 재물로 인식되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처의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처가 내에서만 가산상속이 이루어지며 남성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빙재는 전달 이후에는 남성 측의 재산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를 통해 단지 혼인절차에 따라 후순위로 전달되었던 지참재산의 근원을 온전히 시댁에서 찾는 것은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지참재산의 근원에 대한 논쟁 외에도, 송대 지참재산의 증가 현상에 대한 의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송대 지참재산 증가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면, 법 규정을 통해 송대 지참재산은 당대의 혼인비용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률에서 여성의 혼인비용은 남성의 빙재의 절반에 불과했다면, 송대는 남성의 가산상속의 절반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sup>13)</sup> 법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혼인비용의 크기는 각 집안의 사적인 영역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빙재와 가산상속의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불리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산상속은 빙재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에서 송대 지참재산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14)</sup> 또 범중임(范仲淹, 989~1052)이 1050년에 의장(義莊)의 지출에 대한 규정을 정할 때, 여성의 혼인비용은 30관전, 남성의 혼인비용은 20관전으로 정했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혼인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지참금 증가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참재산이 오히려 송대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시가 슈우조는 사마광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참금 증가의 현상이 시부모의 요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은 딸의 부모에게 큰 부담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참금 증가 현상의 폐해에 대해 사마광은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요즘 탐욕스럽고 야비한 사람들은 머느리를 들일 때 지참금의 크기를 먼저 묻고, 딸을 시집보낼 때는 빙재의 양을 먼저 묻는다. 어떤 자들은 계약을 할 때, '어떤 물건은 얼마큼, 또 어떤 물건은 얼마큼'이라고 쓰니 이는 딸이 팔려가기를 구하는 꼴이다. 혼례식이 끝난 뒤 합의된 것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sup>16)</sup>

사마광은 이 기록을 통해 혼인의식을 마치 상거래처럼 취급하는 일부 가문들을 비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시, 딸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를 언급하면서 혼인비용 증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시부모가 속았을 때는 그 분풀이 방법으로 머느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 딸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러한 탐욕스럽고 야비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딸의 시부모를 기쁘게 할 바람으로 후한 지참금을 장만한다. 지참금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시부모에게 머느리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머느리 친정의 재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으로 이어진 가정들이 종종 원수로 끝나버린다.<sup>17)</sup>

11)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87쪽.

12)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87쪽.

13) 『송형통』, 戶婚律, 여기에서는 장진번, 『중국 법제사』(소나무, 2006, 644쪽)에서 재인용.

14)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88쪽.

15)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158쪽.

16)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券3, 「婚儀上」, 여기에서는 남은혜,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실태」(『법사학연구』, 40, 2009, 190쪽)에서 재인용.

17)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券3, 「婚儀上」, 여기에서는 남은혜,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실태」

지참금 증가 현상에 대한 기록에서 사마광은 지참금이 혼인의식의 차원을 넘어 지참금의 규모에 따라 신부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비판하고 있었다. 사마광의 기록 외에도 송대 가난한 집에서는 일찍부터 높은 지참금 액수로 딸의 혼인을 위해 빚을 져야 했으며 중간정도의 재산이 있는 집에서는 미리부터 재산을 마련하여 딸의 혼인비용을 대비해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18)</sup>

지참금의 액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송대 지참금 증가 현상은 교육받은 계층이 결혼을 통해서 유리한 인연을 맺는 것을 중시한 결과였다는 해석도 있다. 앞선 당대의 혼인은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명문가의 여성들과 혼인하기 위해 남성들의 혼인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반면 송대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교육받은 계층이 증가하고 과거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한 사대부 가문이 증가하면서 협통 대신 남성의 능력이 가문의 위세를 결정하게 되었다. 관인(官人)의 집으로 딸을 시집보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당대와는 반대로 여성의 혼인비용이 증가한 것이다.<sup>19)</sup> 이 과정에서 사대부 집안에서 고액의 지참재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가문의 문제로 지참금 증가 현상과 지참재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다.<sup>20)</sup>

지참금 증가 현상에 대해서 여성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입장은 여성들의 지참금을 높리는 주체가 가정 내 또 다른 여성들, 즉 어머니나 여성형제들이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가정 내에서 혼인비용을 마련하고 구성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였다. 딸에게 많은 지참금을 물려줄 때 동맹자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있으나, 그보다는 같은 여성으로서 힘든 과정을 겪게 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이다.<sup>21)</sup> 더 나아가 어머니들 지참재산뿐 아니라 사위의 출신 지역까지 관여했는데, 지참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자녀들을 타 지역 출신과 혼인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남송대 고위 관료 집안에서는 딸은 타 지역 출신의 남편들과 혼인시키기보다는 근처 가문의 남성들과 혼인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지참재산을 가지고 간 여성들이 가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지참금 증가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참재산이 시집 간 딸로 하여금 가정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여성의 결정권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sup>22)</sup>

송대의 가족형태 변화도 여성의 지참금 보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전 당대는 대가족 중심으로 가장 중심의 가산소비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가산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산 확보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송대의 경우 대가족이 해체되어 독립가정을 이루었고, 시부모와는 분리된 독립가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참재산이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산분할 때, 전택 및 재물을 형제가 균분한다. (……) 다만, 처의 지참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sup>23)</sup>

(『법사학연구』, 40, 2009, 190쪽)에서 재인용.

18) 남은혜(2009),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실태」, 190-191쪽.

19)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89쪽.

20)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158-160쪽.

21)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426쪽.

22)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426쪽.

23) 仁井田隆, 『唐宋拾遺』, 245쪽.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87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송대 건국 직후 제정된 법령의 내용을 본다면, 여성의 지참재산이 일반적인 가산 상속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통해, 지참재산은 엄연히 여성의 재산으로 보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대 법률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지참재산이 송대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인용한 『사마씨서의』는 모순적이게도 여성들의 지참재산이 송대 까지 사회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송대 사회 변화와 송대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이 남송대 까지 이어졌다는 사료를 통해 여성들의 지참재산이 법 규정 안에서 보호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지참금과 관련된 소송사례

송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당률을 따르고 있지만, 송대 사회에 맞게 다양한 세칙을 추가했다. 추가된 세칙으로는 여성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송형통(宋刑統)』 「호혼을(戶婚律)」에 따르면 '고모가 미혼이면 남자가 받는 재산의 반을 줄였다'<sup>24)</sup>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아버지 사망 시에도 아버지의 형제 중 미혼인 고모가 있다면 남자 조카의 상속분 절반을 고모에게 지참재산으로 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 『청명집(清明集)』<sup>25)</sup> 「호혼문(戶婚門)」에는 '미혼녀는 아들이 상속하는 것의 반을 주고 나머지는 관에서 몰수했다.'<sup>26)</sup>는 내용과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그 재산을 나누되, 여자는 남자의 반을 준다. 유복자가 남자이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 유복자가 2를 갖고 어머니가 1을 갖는다.'<sup>27)</sup>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부모 사후에도 지참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8)</sup>

위의 규정들이 실제 적용되고 있었는가는 남송대 원채(袁采)가 남긴 가훈서, 『원씨세범(袁氏世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원채는 지참금이 급상승했지만 이는 여성의 혼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변했으며, 동시에 국가법으로 보호받는 여성의 권리라고 서술했다. 원채는 또한 부모 사망이후 혼인하는 여성에게 국가법에 따라 남성의 몫의 반을 지참재산으로 줘야한다고 조언했다.<sup>30)</sup>

고녀(孤女)에게 가산의 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능력에 맞춰 후한 가산을 주어 시집보내야 한다. 전산(田產)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법조에 따라 주어야 한다. 만약 당장만 생각하여 인색하게 한다면 시집 간 후에 반드시 고소를 할 것이다.<sup>31)</sup>

『원씨세범』에 나오는 전산 분배에 대한 법조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혼인하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지참재산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sup>32)</sup> 또한 여성

24) 『송형통』, 戶婚律, 여기에서는 장진번, 『중국 법제사』(소나무, 2006, 644쪽)에서 재인용.

25)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법사학연구』, 31, 2005, 104-105쪽.

26) 『청명집(清明集)』, 「戶婚門」, 여기에서는 장진번, 『중국 법제사』(소나무, 2006, 644쪽)에서 재인용.

27) 『청명집(清明集)』, 「女婿不應中分妻家財產」, 여기에서는 장진번, 『중국 법제사』(소나무, 2006, 644쪽)에서 재인용.

28) 장진번, 『중국 법제사』, 소나무, 2006, 644쪽.

29) 원채(袁采)는 남송 효종(孝宗, 1162~1189) 5년에 낙청현령으로 『원씨세범(袁氏世範)』을 만든 남송대 사대부다.

30)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0-591쪽.

31) 『원씨세범』, 卷中,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1쪽)에서 재인용.

의 지참재산을 국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대상이 된다는 언급을 통해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될과 동시에 소송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참재산의 소송권은 앞 장에서 설명한 빙재와 다른 지참재산의 상속재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남송대에는 '딸은 아들의 몫의 반을 받는다'<sup>33)</sup>는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례 자료도 남아있다. 유극장(劉克莊, 1187~1269)의 판어를 인용한다면, 직접적으로 법률 조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결에서 여성에게 재산상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판어는 진현승의 가족이 진현승 사망 이후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소송과 재판을 거듭하면서 작성된 내용으로, 일반적인 유산 상속과는 다르게 후계자였던 유복자 세광의 사망으로 복잡해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전현승(田縣承)에게는 유복자(遺腹子) 세광(世光), 친생자(親生子) 진진(珍珍), 그리고 본처 소생의 두 딸이 있었다. 만약 세광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남녀분할법(男女分割法)에 따라 전현승의 자손들만이 유산 상속자가 되어 세광에게 1/3, 진진에게 1/3,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게 1/6씩 배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현승과 전세광의 연이어 사망하면서, 세광의 첫 소생인 두 딸과, 전현승의 친생자 진진, 그리고 두 딸이 유산 상속의 대상으로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전현승의 동생이 항렬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아들 세덕(世德)을 세광의 계절자(繼絕子)로 입적시키면서, 유산 상속의 비율분배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유극장은 세광이 사망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서 재산 분배와 관련해 제자균분지법(諸子均分之法)에 따라 양분하고자 했다. 제자균분지법을 따르면 현승의 재산을 세광과 진진이 1/2씩 나누어가진다. 그리고 세광의 자식들은 세광의 몫을 나누어 가지고, 진진과 그의 누이들은 남녀분할법(男女分割法)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된다.<sup>36)</sup> 여기서 세광의 자식들이 남녀균분지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세덕이 계절자이기 때문이다. 남송대 호절법에 따르면 계절자에게도 재산 상속을 하되 친자식인 딸들의 결혼 유무에 따라 분할 상속을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세광의 자식들은 두 딸의 결혼 상태에 따라 재산상속분이 다르게 정해진 것이다.<sup>37)</sup> 제자균분지법을 시작과 호절법의 계절자 상속, 남녀균분지법에 따라 세광의 아들 세덕은 2/16, 세광의 두 딸들은 각 3/16씩, 진진은 4/16 그리고 현승의 두 딸은 2/16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제자균분지법을 따르면 세광의 딸이 자신의 고모인 현승의 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때문에 이것은 현승의 딸들이 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유극장은 다른 결론을 내리야만 했다.<sup>38)</sup>

32)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91쪽.

33)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91쪽.

34) 『청명집』, 卷8, 女承權,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5쪽)에서 재인용.

35) 『청명집』, 卷8, 立繼,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5쪽)에서 재인용.

36)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95쪽.

37)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94쪽.

38) 『청명집』, 卷8, 女承權,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4쪽)에서 재인용.

39) 육정임은 그의 논문에서 위 소송이 제자균분법에 따른 분할 상속은 일반적인 남녀분할법이나 제자균분법을 따른 상속으로 보기 어려운데, 유극장이 표발법(標發法)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표발법은 동복형제의 경우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의 원칙을 깨고 이복형제의 경우 분할 상속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 경우 세광과 진진의 경우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표발법을 적용해서 분할상속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상속분은 각 가정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시가 슈우조, 『處分孤遺田產』,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5쪽)에서 재인용.

결국 유극장은 최종 판결로서 세광의 사자로 입적된 세덕에게 1/8의 지분과 세광의 장례비용으로서 추가로 1/8의 뜸을 증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세광의 딸들에게는 각각 1/8씩, 진진에게는 2/8를, 현승의 두 딸에게는 1/8의 뜸씩 할당했다.<sup>40)</sup>

유극장의 판어에는 최종판결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었다.

유씨(본처)의 두 딸은 현승의 친녀이므로, 설사 세광이 살아 있을 때에도 마땅히 진진과 균분하고 두 딸은 남자의 반을 받아 마땅하다. 때문에 부분을 10분하여 5분은 진진이 가지고 5분은 두 딸에게 상속하는 것이 법의에 맞다.<sup>41)</sup>

이와 같이 유극장 또한 엄격하게 남녀분할법을 따른다면 현승의 자식들만 두고 재산상속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광의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분할상속을 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항소(抗訴)를 막고자 했다. 그리고 진진과 두 명의 누이들 사이에서는 남녀분할법을 적용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남녀분할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보다 남녀분할법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판관들 또한 그 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청명집』에 등장하는 오자순 사망 이후, 오씨 일족의 오진이 오자순의 부인(채씨)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도 여성의 지참재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청명집』에서는 지참재산뿐만 아니라 외손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딸 부부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연분지나 청기지 등은 모두 여자의 '지참금'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지참재산은 부부 사망 후에는 자식들에게 균분 상속되고, 남편 사망 후 재혼할 시 여성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오씨의 소송에 대한 판어에서, '남아있는 전자는 장씨(오자순의 처)가 지참한 밭이지 오씨의 재산이 아니다'는 오군문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이것은 일족 내에서 처의 지참재산이 가족공유재산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자순의 소송 외에도 진규(陳圭)의 소송을 통해서도 지참재산은 가족공유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규는 아들 진중용과 그의 처 채씨가 가족공유재산을 지참재산으로 둔갑해 채인에게 저당잡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채인을 불러 토지거래문서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채씨의 지참재산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판관은 처가로부터 얻은 재산은 재산분할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진규의 소송을 파기했다.<sup>44)</sup>

그렇다면 오진과 진규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추측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처의 재산은 모두 남편과 함께 주인이 된다'<sup>45)</sup>는 조항 때문일 것이다. 이 조항으로 처의 지참재산이 부부 동거 시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권을 가진 남편의 친족들이 여성의 지참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소송이었다. 하지만, 처의 지참재산은 동거공재 가족체제 하에서 중분(中分)할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40)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96쪽.

41) 『청명집』 卷8, 立繼, 여기에서는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595쪽)에서 재인용.

42)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597쪽.

43) 『청명집』, 「戶婚門」, 立繼, 여기에서는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법사학연구』, 31, 2005, 112쪽)에서 재인용.

44) 『당률소의(唐律疏議)』, 卷12, 戶婚, 여기에서는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법사학연구』, 31, 2005, 112쪽)에서 재인용.

45) 『청명집』, 「戶婚門」, 立繼, 여기에서는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법사학연구』, 31, 2005, 112쪽)에서 재인용.

즉 남편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를 공유할 수 없었고 이를 근거로 판관들은 지참재산에 대한 처의 권리를 인정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성들이 동거하는 다른 친족들에게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처의 지참재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46)</sup>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뒤 이 재산을 재가하는 여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자순의 친척들과 진규는 지참재산의 출처를 정확히 하고자 했을 것이다.<sup>47)</sup>

『청명집』에서는 소송사례 외에도 처의 지참재산 공유범위와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처의 지참재산으로 산 혹은 불린 부부의 재산은 부부동거시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참재산이 남편과는 공유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사후 혹은 이혼 시에는 남편과의 공유재산의 개념이 깨지고, 여성의 지참재산으로서 다시 여성에게 귀속된다. 즉 여성은 남편의 집을 떠날 때 본인의 지참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가능했다.<sup>48)</sup> 이것은 여성의 지참재산이 결국 여성에게 근본적인 권리를 부여했음을 의미했다. 지금까지 『청명집』의 소송사례와 규정으로 남송대 여성의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실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지참금 제도가 실제 소송에서 적용되어 여성의 지참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II. 호절법(戶絕法)이 규정한 여호(女戶)의 재산상속

송대 지참금제도가 송대 여성들의 재산권 보장과 가산상속에 대해서 증명하는 법률이라면, 송대 호절법은 여성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가계계승권을 입증하는 근거다. 송대 호절법은 기본적으로 당률을 계승하고 있지만, 송대는 이전 당대와 다르게, 데릴사위혼(웨서혼, 賛婿婚)이 증가하고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립가정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세칙들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독특한 집단이 바로 여호다.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 호를 계승하는 것은 직계혈통의 남성들이었다. 그러나 이혼과 웨서혼의 증가는 전통적인 호주 계승을 어렵게 만들었다. 송대 법률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호절법에 적용하여 여성의 호주계승을 인정하고 관련된 세칙들을 추가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여호 가정을 발생시켰다.

송대 여호는 크게 과부의 호주 계승과 딸의 호주 계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 딸의 호주 계승은 결혼의 유무에 따라 웨서혼을 한 딸의 계승과 미혼 여성의 호주 계승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여호의 등장은 송대 가족형태 변화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여성의 재산권을 바탕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이어지던 가계계승권과 경제력이 여성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과부와 딸의 호 계승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 1. 과부의 재산상속과 호주 인정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성격은 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시된 것이 제사를 주관하는 아들의 존재였다.<sup>49)</sup> 그러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친자가 없는 경우를 호

46) 『원씨세법』, 卷1, 體觀, 여기에서는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 문제」(『법사학연구』, 31, 2005, 112쪽)에서 재인용.

47)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111-113쪽.

48)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113쪽.

절이라고 불렸으며, 이 경우 제사 주관과 재산상속에 대해서 규정하는 호절법이 필요했다. 송대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가정이 증가했고, 호절에 대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했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송대 호절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성 가계계승자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 여성이 재산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sup>51)</sup> 여호로서 인정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크게 과부의 계승과 딸의 계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송대는 양자상속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절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볼린다. 만일 사자(嗣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호절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sup>52)</sup>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청명집』의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죽었어도, 그 조부모 (혹은)부모가 생존해있어 양손(養孫)을 두거나, 혹은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있어 양자(養子)를 두면 계절(繼絕)은 아니다.<sup>53)</sup>

주목해야 할 점은 후계결정권한이 여성에게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후계 없이 가계계승자인 남성이 사망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에게 후계결정권이 입사권(立嗣權)이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의 직계존속에게 부여되었다.<sup>54)</sup> 과부의 입사권은 남편이 죽은 이후 개가하지 않고 가호에 계속 거주할 경우 부여되었으며, 남편의 재산 또한 계승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독립가호의 호주였을 경우 남편 대신 호주가 되었다. 이후 입사자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비호절가의 여호로서 인정되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55)</sup> 하지만 이러한 재산 관리권과 호주의 권한은 여성이 재혼할 경우 박탈당하면서 해당 가호는 호절 처리되었다.<sup>56)</sup>

과부가 호를 계승하는 것은 사실 한(漢, 기원전 206년~220년)대와 당(唐, 618년~907년)대에도 있었던 사실이다.<sup>57)</sup> 보다 명확하게 가계계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대의 호절법은 진한 교체기의 혼란기로 인해 호수의 감소와 절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여호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년율령(二年律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가장이 죽었는데 호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부모가 잊게하고 부모가 없으면 부인이 잊게하고 부인이 없으면 딸이 잊게 하고 딸이 없으면 손자가 잊게하고(……)<sup>58)</sup>

즉 아들과 직계존속이 부재하는 호절 상황의 경우 처(과부)에게 계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sup>59)</sup>

49)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송대 가족과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2003, 99쪽.

50)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79쪽.

51)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100쪽.

52)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102쪽.

53) 『청명집』 卷7, 劍司箇筆, 여기에서는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송대 가족과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2003, 102쪽)에서 재인용

54)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103쪽.

55)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89쪽.

56)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103-104쪽.

57) 당률은 남성직계계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번 지역에서는 과부나 딸이 호주가 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85쪽.

58) 『張家山漢墓竹簡』, 「二年律令」, 「置後律」, 379-380쪽, 여기에서는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법사학연구』, 35, 2007, 186쪽)에서 재인용.

59)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86-187쪽.

그러나 송대 과부의 가계계승이 보다 특별한 이유는 호내 남성이 있을 경우 여호의 등장이 불가능했던 앞선 시대와는 다르게, 호내 남성이 있더라도 호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내 남성이 미성년일 경우 과부가 여호로 인정되었다.<sup>60)</sup>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 「부역문(賦役文)」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모든 여호의 과부는 제 3등 이상이 비록 남자가 있어도 15세 이하의 경우는 과배는 호등을 1등 아래로 부담을 경감하고 4등 이하는 면제하였다.<sup>61)</sup>

이를 통해 15세 이하의 어린 남성의 실질적인 계승(재산상속 및 제사주관)이 불가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운용을 유연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2)</sup>

송대 호절법이 특별한 이유는 접각부(接脚夫)를 허용했다는 것에도 있다. 접각부란 전남편이 죽은 후 과부가 맞이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새 남편'을 의미한다.<sup>63)</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대로라면 과부가 개가할 경우 여성은 호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새 남편의 집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접각부라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남편의 집에 계속 살게 될 것으로써 다른 집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고 전남편의 집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으며 전남편의 가산에 관여할 수 있었다.<sup>64)</sup> 접각부 제도에 대해서는 『청명집』, 「호흔문」에도 언급되어 있다.

법에 접각부의 제도가 있는 것은 무릇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은 어려 가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sup>65)</sup>

이를 통해 전남편이 사망했는데 어린 아들이 있는 경우 접각부를 들임으로써 대비하도록 한다는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접각부의 능력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아들이 성인일 경우 가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경우 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접각부'가 아니라 개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청명집』에 등장하는 접각부에 대한 설명으로는

'법에서 접각부가 있는 것은 필경 전남편이 죽고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집을 관할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이라고 하듯이 전남편의 아이가 미성년이고, 또한 가산을 관리할 분배의 물이 있는 친족이 없는 것이었다.'<sup>66)</sup>

특수한 상황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접각부는 아내와 공동으로 전남편의 가산을 관리할 뿐, 남성 자체의 권리는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시킴으로써 접각부가 전남편의 가산을 함부로

60)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88쪽.

61) 『慶元條法事類』 卷48, 「賦役文」 2, 여기에서는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법사학연구』, 35, 2007, 187쪽)에서 재인용.

62)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87쪽.

63)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서석제, 마효철,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법학논고』, 제16호, 2000, 265쪽.

64)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서석제, 마효철,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265쪽.

65) 『명공서판청명집』, 卷9, 「戶婚門」, 여기에서는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법학논고』, 제16호, 2000, 265쪽)에서 재인용.

66) 『명공서판청명집』, 卷9, 「戶婚門」, 여기에서는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법학논고』, 제16호, 2000, 266쪽)에서 재인용.

처분하는 것을 방지했다.<sup>67)</sup> 송대 접각부는 결혼 이후 전남편의 가산에서 '자신의 몫'을 가지는 일이 없었으며, 호 내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거나 후계자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후계자와 관련해서 양자를 들일 권한의 경우 철저히 과부에게 입사권이 부여되었다.<sup>68)</sup> 결국 접각부는 남편이 사망하여 호주가 된 여성들이 공동으로 가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중요한 결정권과 처분권리는 여성에게 있었다. 즉 접각부는 일반적인 개가와는 다르게 호내 여성의 권리가 침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여성의 가계계승권과 관련한 결정권한 및 재산권을 증명하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 2. 딸의 재산상속과 호주 인정

송대 여성은 결혼 이후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호주를 계승할 남자가 없거나 아들이 아직 어린 경우 외에도 특수한 경우 호를 계승할 수 있었으며 전토를 포함한 남편의 가산 소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딸의 지위로 가산 상속 및 호주 계승이 가능했으며,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단신 여성의 여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사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송대 여성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여성의 가계 계승 허용되었을 것이다.<sup>69)</sup>

실제 송조는 호절법에 여아의 재산상속권에 대한 세칙을 제정했는데, 딸들의 결혼 유무에 따라 재실녀(在室女), 귀종녀(歸宗女), 출가녀(出家女)로 구분해서 호절재산의 상속을 다르게 했다. 『청명집』「호절문」에 따르면 '무릇 호절재산은 재실녀에게는 모두 지급하고 귀종녀에게는 반을 강하여 지급한다. 만약 출가녀만 있다면, 가산의 1/3을 주고 그 재산액이 모두 3000 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70)</sup> 친딸들에게 재산 상속을 한다는 규정은 당률을 따르고 있지만, 결혼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1)</sup>

송대 여성의 재산권은 단순히 재산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출가한 여성의 경우에도 지참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결혼으로 남편의 집안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친정의 호를 계승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출가녀의 경우 재산상속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귀종녀의 문제인데, 귀종녀는 출가녀와 다르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다시 친정에 소속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자격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참금을 다시 가지고 올으로써 본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지참금을 친정에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혼인비용의 성격도 사라지게 된다. 북송대는 귀종녀에 대해서 출가녀와 동등한 지위로 대하고 있었으며, 가산 상속에서도 재실녀와 비슷한 가산 상속이 가능했다.<sup>72)</sup> 다만, 귀종녀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고 친정에 돌아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남편과 사망하는 경우 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경우 남편의 가산에 대한 재산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의 여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남송대는 호절법의 범위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귀종녀의 재산상속을 축소한다

67)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265-266쪽.

68)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269쪽.

69)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93-194쪽.

70) 『청명집』, 「戶婚門」, 女承分, 여기에서는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법사학연구』, 35, 2007, 196쪽)에서 재인용.

71)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95쪽.

72)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96-197쪽.

73)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96-197쪽.

는 점에서 호절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4)</sup>

송대 여성들이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송대의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상품경제의 침투로 인해 송대 여성들은 가내노동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생활에도 참여함으로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했다. 중국에서 베를 짜는 일과 양잠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송대 여성들의 생필품을 만드는 작업은 호에 부과된 조세충당의 수단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견직물은 생산지역의 확대와 소비의 증가에 따라 상업유통망이 증가했다.<sup>75)</sup> 여성의 노동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가내노동은 조세 충당의 수단이 되었으며, 여성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여성 노동력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 노동력 없이도 여호가 가계를 이끌어 가는 수단이 되었으며 실제 송대 흥매(洪邁, 1123~1202)가 엮은 설화집인 『이건지(夷堅志)』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과부가 된 여성이 직조를 통해 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6)</sup> 결국 주요 농업노동력인 남성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직조와 양잠이라는 가내노동의 발달과 상업의 발달로 여호의 가계 운영은 가능했으며, 이는 여성의 재산권을 더욱 강화하고 여호를 인정하는 하나의 사회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과부가 재혼을 함으로써 전남편의 가산을 접각부와 공동운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데릴사위를 통해 여성이 친정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송대 데릴사위혼은 점차 증가했는데, 『송사(宋史)』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사천에서 '빈민이 그 부모를 버리고 데릴사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심히 풍속에 해를 입히고 또한 쟁송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하기를 바랍니다.'<sup>77)</sup>라고 지방관리가 상주하여 황제가 조서를 내릴 정도였다.<sup>78)</sup>

남송과 관련된 지리, 풍속을 담은 수필집인 『몽량록(夢梁錄)』에 기록된 '세첩자(細帖子)'는 송대 데릴사위혼이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증거였다고 할 수 있다. 세첩자는 재산의 목록을 기록한 상세한 단자였다. 여자가 남자 쪽 집으로 시집갈 때 가지고 갔던 단자와 같이 데릴사위로 혼인하는 남성들이 장가갈 때 가지고 가는 단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첩자에서 남성들은 데릴사위로 장가를 가면서 가지고 가는 물품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데릴사위로 결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다. 세첩자는 빈민들뿐만 아니라 잘 교육받은 남성들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신분에 상관없이 송대 데릴사위혼의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9)</sup>

그러나 접각부와 마찬가지로 데릴사위는 여성의 집안에서 많은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경원법조사류』에 따르면, 사위는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 규정되어있어, 데릴사위라고 하더라도 출가한 딸의 남편과 동등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데릴사위가 처가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복 규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위를 위서(爲婿, 위녀지부, 謂女之夫)라고 명시함으로서 호내에서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0)</sup> 또 데릴사위로 들어온 남성들은 여성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었으며, 처가의 가산을 관리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일을 통해서만

74)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196쪽.

75)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271쪽.

76)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272쪽.

77) 『송사』, 「太宗紀」 2, 여기에서는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법학논고』, 제16호, 2000, 264쪽)에서 재인용.

78)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263-264쪽.

79)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374쪽.

80) 『경원법조사류』 卷77, 「服制門」, 服制, 여기에서는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법학논고』, 제16호, 2000, 264쪽)에서 재인용.

장인, 장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처가 내 데릴사위가 계승권이나 상속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1)</sup>

홍관생(洪觀生)이 자식이 없어, 가산을 딸과 사위에게 주고 (홍관생의 데릴사위인)오옹(吳庸)과 관계 없이 이행과 더불어 교관(交關)할 수 있고, 홍관생의 친딸인 홍칠낭(洪七娘)은(……)<sup>82)</sup>

위의 『청명집』의 내용을 통해서 호내 남성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위에게 가산이 상속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산을 딸과 사위에게 주고'라는 구문을 통해 사위는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결국 사위 자체로는 가계계승 및 재산 상속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딸은 데릴사위와 상관없이 그 가산을 처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요 재산권은 여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3)</sup> 데릴사위와 여성과 공동 상속을 받는다는 내용은 홍관생의 사례뿐 아니라 유량(俞梁)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량이 사망하여, 딸인 유백육낭(俞百六娘)과 결혼한 진옹룡(陳應龍)이 가산을 상속받는데, 이때 '데릴사위의 재산상속의 경우 반드시 여성과 공동관리한다'<sup>84)</sup>라는 호절법의 령을 인용하면서, 데릴사위의 재산상속은 딸의 존재로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었다.<sup>85)</sup>

데릴사위혼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재산권은 가족 내 여성의 영향력과도 연결된다. 남송대 송령(宋濂, 1310~1381)의 기록을 통해 여성의 재산권이 이후 가족 내 대소사를 결정하는 권한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령은 데릴사위혼에 대한 감정상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록한 내용은 남송대 첫 번째 데릴사위 가정인 누(樓)·왕(王)·태(泰)가문의 이야기다.<sup>86)</sup> 누약(樓鑑)과 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묘청(妙清)은 데릴사위혼을 했으며, 많은 지참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왕씨는 묘청을 몹시 사랑했다. 그래서 딸을 위해 호숫가에 방이 17칸이나 되는 집을 지어주었고, 별도로 약간의 땅나무를 할 수 있는 산과 채소밭과 비옥한 토지를 주었다. 왕씨는 묘청과 남편에게 말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시집을 때 가져온 지참금으로 경영한 것이다. 나는 조금도 누 가정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재산을 주의해서 간수하라."<sup>87)</sup>

묘청과 남편 왕야(王埄)사이에는 수(琇)와 영(瑩)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수는 누여준(樓如俊)에게 시집을 보내고, 영은 태불화(泰不華)와 혼서혼시켰다. 이후 데릴사위인 태불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영의 자식인 야선(野仙)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있다.

묘청은 야선에게 상당한 애정을 쏟았고, 야선이 완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치 야선이 묘청 자신의 아들인 것 같은 정도였다. 야선이 다 성장했을 때 그들은 자기네 가문과 상의를 했고, 그 가문에서는 누약(묘청의 아버지)의 증손인 누연(樓淵)에게 명하여 그의 딸인 누선(樓善)이 야선과 결혼

81)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贊婿) 小考」, 380쪽.

82) 『명공서판청명집』, 卷6, 「戶婚門」, 여기에서는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贊婿) 小考」(『법학 논고』, 제16호, 2000, 270쪽)에서 재인용.

83)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贊婿) 小考」, 270쪽.

84) 『명공서판청명집』, 「호절문」, 卷9, 여기에서는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贊婿) 小考」(『법학 논고』, 제16호, 2000, 271-272쪽)에서 재인용.

85) 가와무라 야스시, 「宋代 데릴사위(贊婿) 小考」, 271-272쪽.

86)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378쪽.

87) 『宋學士文集』, 10卷, 183쪽, 여기에서는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한국학술정보, 2009, 379쪽)에서 재인용.

하도록 했다. 묘청은 남편에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불행히도 아들이 없다. 지금 우리 딸의 아들인 야선은 교양있고, 예의바르며, 게다가 나의 조카의 딸과 결혼 했다. 야선을 제외하고 누가 우리와 더 가깝게 맺어진 사람이 있겠는가? 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모든 재산을 야선에게 줄 것이다 (……)”고 말했다.<sup>88)</sup>

두 기록을 통해 왕씨와 묘청은 많은 지참금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간섭당하지 않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재산권을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청은 또한 호절 상황에서 자신의 손자인 야선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자신의 지참재산을 야선에게 상속할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묘청에 대한 기록은 여성의 권한이 호절 상황에서 가지는 위력을 재확인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재산권이 가족 내 영향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IV. 맷음말

기존의 중국사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송대에만 여성의 재산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송대에는 법률 속에서 상속재산으로써 여성의 몫은 확실히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시대 여성의 권리와는 다른 의의가 있다. 또 주자학의 관학화로 명청대에는 여성의 권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에서 송대 여성의 재산권과 가계계승권은 중국 여성사 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송대 여성의 권리는 크게는 당대에서 명청대로의 이행, 작게는 송대 사회변화 과정에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송대 여성들의 권리 변화에 대해 시가 슈우조의 입장은 일부 변경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당대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사례만으로 송대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이다 노보루는 중국 가족사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대 그리고 이후 명청대와는 다른 송대 여성의 권리 변화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니이다 노보루는 여성의 권리를 각 시대별 특징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니이다 노보루의 해석을 바탕으로 송대 여성의 재산상속을 통해 송대 여성의 권리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대 여성들의 지참재산과 그에 대한 소송사례는 여성의 권리 변화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다. 『송형통』과 『청명집』, 『사마씨서의』, 그리고 『원씨세법』에 등장하는 지참금과 여호의 사례는 송대 여성의 이전시기의 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송대 여성들이 법으로 보장되는 지참재산을 획득함에 따라 가정 내에서 그들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송대 여성들은 후계자 선정과 자식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심지어는 호절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호주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을 의미했다.

송대 사회 변화는 여성들의 권리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송대 사회변화 외에도 남성과 여성의 분리와 여성에게 종속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주자학이 남송대가 되어서야 관학화된 것도 여

88) 『宋學士文集』 10卷, 183쪽. 여기에서는 Ebrey,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한국학술정보, 2009, 379-380쪽)에서 재인용.

성들의 권리 보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89)</sup> 그리고 송대 호절법과 관련된 세칙이 규정되면 서 여호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여성들에게 가계계승권과 경제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참금제도와 호절법은 나아가 중국 가족사를 단순히 가천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역동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9) 박지훈, 「송대 사대부의 여성관-가훈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6, 2002, 286쪽.

## 참고문헌

### 단행본

- 니이다 노보루, 『中國法制史研究·奴隸農奴法·家族村落法』, 1980. 박세민, 임대희 옮김, 『중국법제사연구(가족법)』, 서경문화사, 2013.
- 서양걸, 『中國家族制度史』, 윤재석 옮김, 『중국가족제도사』, 아카넷, 2000.
- 장진번, 『中國法制史』, 한기종 옮김, 『중국 법제사』, 소나무, 2006.
- Ebrey, Patricia Buckley, *(The) inner quarters :marriage and the lives of Chinese women in the Sung period*, 1993. 배숙희 옮김, 『송대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한국학술정보, 2009.

### 논문

-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서석제, 마효철, 『宋代 데릴사위(贅婿) 小考』, 『법학논고』, 제16호, 2000.
- 강희수, 『송대의 여성 재산권에 대한 연구동향』, 『중국사연구』, 17, 2002.
- 김보영, 『송대 여호의 입호와 국가관리』, 『법사학연구』, 35, 2007.
- 김유철, 『균전제와 균전체제』, 『강좌 중국사 2』, 2004.
- 남은혜, 『송대 가족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법사학연구』, 38, 2008.
- 남은혜,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실태』, 『법사학연구』, 40, 2009.
- 박지훈, 『송대 사대부의 여성관-가훈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6, 2002.
- 신성곤, 『당송변혁기론』, 『강좌중국사 3』, 1999.
- 우성숙, 『『명공서판청명집』을 통해 본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법사학연구』, 31, 2005.
- 육정임, 『송대 딸의 상속권과 법령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30권, 2003.
- 육정임, 『호절 상속의 변화와 그 성격』, 『송대 가족과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2003.